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1371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74,817원 및 그 중 47,060,55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113,692,3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897,43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하고, 피고 D, E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F, G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반정모

별지